1/16

1.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사 16

- ① '세무공무원'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소속 공무원도 포함한다.
- ②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③ '공과금'이란「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④ '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원천 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 ⑤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 2.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회계사 20
 - ①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도 포함한다.
 - ②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③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 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하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 3. 국세기본법령상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프로그램의 오류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 시「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 장이 찍히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③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장부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어 세 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4.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형

세무사 21

- ①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 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② 납세의무자, 그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 ③ 집배원이 아파트경비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의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납부고지서의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으로만 하여야 한다.
- ⑤ 국세기본법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사 13

- ①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는 금액에 관계 없이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대표자가 없으면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제외하고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 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 ④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 하게 하여야 하고,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 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 ⑤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송달할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 6.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법인으로 본다.
- ②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는 「소 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되, 구성원간 이익의 분 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분배되는 것으 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 아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 ③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법인으로 다루어지며 그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법인세법」에 따른 토지 등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 ④ 국세기본법상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법 인 아닌 단체는 그 승인일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대표자나 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단체의 구성원 또는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2/16

①형

제2교시

7. 국세기본법상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후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세무사 20

-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L)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ㄷ)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ㄹ)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ロ)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 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원칙적 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 (ㅂ)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 ① 7, 5, 5
- ② ㄹ, ㅁ, ㅂ
- ③ 7, 上, ⊏, 由

- ④ ㄱ, ㄴ, ㄹ, ㅂ
- ⑤ ㄴ, ㄷ, ㄹ, ㅁ
- 8.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사 17

- ① 조세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 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② 세무서 직원들이 명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세무지도를 하여 납세자가 이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과세관청이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 바되다
- ③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④ 납세의무자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한 경우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 하지 않는다.
- ⑤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후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 9.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과 관련이 없는 것은?

세무사 15

- ① 거래의 형식은 매매이나 그 실질이 증여이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 ② 세무서장이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거주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 하여야 한다.
- ④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 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 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10.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사 12

- ① 국세기본법은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이외에 해석에 의한 소급과 세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 ② 국세기본법은 새로운 입법에 의한 과세가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납세의무의 확정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③ 부진정소급입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통상의 경우에는 허용되지만, 납세자의 구법(舊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④ 개별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입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 으로 조세공평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⑤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 또는 신뢰 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일정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예외 가 인정될 수 있다.
- 11.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회계사 19

- ①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 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 ②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 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⑤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 하여야 한다.
- 12.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사업자등록의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형식이 경제적 실질에 우선하므로 사업자등록의 명의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②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나 장부의 기록에 일부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전체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③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국가의 과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 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 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 한다.

제2교시

①형

9/16

13.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무사 14

-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및 세무서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법해석의 기 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국가재정법」 상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 ③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세법으로 본다.
- ④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확정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 하다
- ⑤ 세무공무원은 국세의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 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존중하여야 한다.
- **14.**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내용이다. 올바른 설명은 모두 몇 개 인가?

세무사 18, 19

- (1)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 (2)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 (3)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 (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5) 무신고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
- (6)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 (8)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 ① 3개
- ② 4개
- ③ 5개

- ④ 6개
- ⑤ 7개
- **15.**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회계사 21
 - ①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②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
 - ③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
 - ④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 ⑤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 16. 거주자 甲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세무사 17

- ㄱ. 부친이 ×1.4.1.에 사망하여 甲에게 부과된 상속세
- ㄴ. 甲이 ×1.2.1.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ㄷ. 은행이 ×1.5.1.에 甲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 ㄹ. 甲이 ×1년에 중간예납한 소득세
- 口. 甲이 금융업자로서 그 수익금액에 대하여 ×1년에 부과받은 교육세
- ① 7-6-6-9 ② 6-7-6-9 ③ 6-7-6-9-2
- 4 z-c-7-l-d 5 d-7-l-c-z

17.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회계사 16

- ①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하는 증여가 있으면 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③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④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만, 신고의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새로이 확정시킬 수 있으나 정부가 스스로 확정한 세액을 다시 고칠 수 없다.
- ⑤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해당 세금을 징수한다.
- 18. ㈜A는 제21기(2021년 1월 1일~12월 31일)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신고기한: 2022년 3월 31일).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지서 발송일: 2023년 5월 2일, 고지서 받은 날: 2023년 5월 4일, 고지서상 납부기한: 2023년 5월 31일). ㈜A의 제21기 귀속분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한연장사유로서의 요일은 고려하지 아니함)

세무사 09

- ① 법인세 납세의무는 제21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
 - ② 법인세 납세의무는 2022년 3월 31일에 확정된다.
 - ③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22년 4월 1일이다.
- ④ 법인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2023년 6월 1일이다.
- 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2023년 5 월 4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19.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에 관한 설명이다. **옳** 지 않은 것은?

-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② 세법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 ④ 5억원 이상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및 압류의 사 유로 중단된다.

세법개론

제2교시

20.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에 관한 설명이다. <u>옮</u>지 않은 것은?

회계사 22

- ①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이다.
- ② 납세의무자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결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국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 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 21.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 액이 확정되는 국세가 아닌 것은?

세무사 23

- ① 인지세
-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③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 ④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
- 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 세로 한정한다)
- 22.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A는 제3기 사업연도(2014.1.1.~12.31.)의 매출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일부 누락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과세관청은 2021.2.2. (주)A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사외유출 귀속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인 甲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사 21

- ① 소득처분 관련 甲의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2014년이 끝나는 때이다.
- ② 甲이 사외유출된 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을 입 증하였다면 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 ③ (주)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 ④ 甲이 스스로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4년 과세기간 귀속 소 득의 소득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라면, 甲에 대한 소득 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20.5.31.이다.
- ⑤ 甲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주)A에 대한 소득 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23. 「국세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사 17

- ①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하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 상속인이 사망하였더라도 해당 재산의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 과할 수 있다.
- ②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과세제도가 원칙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 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③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서는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가 아니라 면 증여세와 동일한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 ④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⑤ 5억원 이상의 국세에 대한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24.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사 15

- ① 내국법인인 ㈜서울이 역외거래에 대해서 이중장부 작성을 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이다.
- ② 내국법인인 ㈜평촌의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세액에 대한 국 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제1기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24.7.26. 로 본다.
- ③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④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중단된다.
- 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해당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부담부증여와 관련되어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포탈한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이다.
- 25.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의해 신고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함)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이 경우 중간예납・ 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납세담보 제공, 교부청구의 사유로 중단된다.
- ④ 소멸시효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 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한다.

제2교시

①형

11/16

26.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무사 20

- ①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있다.
-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예정신고기한 포함)의 다음 날로 한다.
- ③ 조세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명의 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법인세법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 납세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한다.
- 27.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회계사 23

- ① 납세자가 역외거래에서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 ②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사망한 때에는 과세 관청은 해당 재산의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③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 ④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 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⑤ 공제세액을 의무불이행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의 부 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관청이 의무불이행이 있음을 안 날이다.
- 28. 국세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계사 18

- ①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이다.
-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 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 이루어진다.
- ③ 10억 원의 국세에 대한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④ 역외거래를 제외한 사기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그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5년의 기간이 끝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⑤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9.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회계사 23

-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 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 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 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합병으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과 분 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 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 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④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⑤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30.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사 16

- ① 공동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④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 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그 법인 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⑤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31.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이 일체로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 ②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세금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무한 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세금에 대하여 한도 없이 납세의무를 진다.
- ③ 과점주주가 회사의 조세채무에 관하여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그 책임의 한도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를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에 비례한다.
- ④ 법인이 무한책임사원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부담하는 제2차 납세 의무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다 내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 해당 법인의 납세의무를 2차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잔여재산의 분배업무를 처리한 청산인이 아니라 그 잔여재산을 가져간 출자자이다.

세법개론

제2교시

3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갑, 을, 병이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서 납부할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회계사 14

- (1) 비상장법인 ㈜A는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00,000원과 제24기 사업연도(2024.1.1.~2024.12.31.) 법인세 9,000,000원을 체납하였다.
- (2) 관할 세무서장이 ㈜A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2025년 10월 25일 현재 압류가능 재산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 (3) ㈜A의 2024년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주	2024.1.1. 현재 보유주식수	2024.10.5. 주식변동상황	2024.12.31. 현재 보유주식수
갑	600주	-300주(양도)	300주
을	200주		200주
병	200주	+300주(양수)	500주
발행주식총수	1,000주		1,000주

- (4) 을은 갑의 배우자이며, 병은 갑과 을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 (5) ㈜A의 발행주식총수 1,000주 중 100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갑이 계속 보유중이다.
- (6) 갑, 을, 병은 ㈜A의 경영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갑		병병
1	2,500,000원	1,000,000원	5,000,000원
2	2,700,000원	900,000원	4,500,000원
3	2,700,000원	900,000원	5,000,000원
4	7,500,000원	1,000,000원	0원
5	0원	0원	7,500,000원

33.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회계사 15

- ① 사업이 양도 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② 사업의 양도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 소득세에 대하여는 그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③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 ④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 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 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만 진다.

34.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무사 20

- ①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그가 받은 보수의 총액이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그가 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②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 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때 사업의 양수인은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자에 한한다.
- ③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확정 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 2차 납세의무를 진다.
- ④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 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 주주라 할 수 없다.
-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과점주주는 그 법인이 납부하는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 무를 진다.
- **35.**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 른 것은? 회계사 23
 - 기.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이며, 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 합명회사의 사원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다. 법인이 과점주주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 관계인인 자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이다.
 - ① ¬, ∟

② ㄴ, ㄹ

③ 7, 5, 2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제2교시

①형

13/16

36. 국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사 18

- 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 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③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 ④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 를 지지 아니한다.
- ⑤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사업양도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37.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회계사 19

- ①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공과금 및 강제징수비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하여 징수된다.
- ②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압류 순서에 관계없이 그 담보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③ 소득세의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소득세보다 우선 변제된다.
- ④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최종 3월분 임금채권은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 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38.「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회계사 21

- ①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한다.
- ②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금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한다.
- ③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를 하여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④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 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종합부동산세에 우선한다.
- ⑤ 국세의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경우 그 납세담보물을 지방세 체 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경우에도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 각대금 중에서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39.「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회계사 22

-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 ② 강제집행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 ③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해당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 ④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 ⑤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 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40. 국세기본법상 국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회계사 20

- ① 경매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국세는 경매절차에 든 비용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②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를 납세의무의 확정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③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 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 징수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 ④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자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⑤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그 납세자의 양도담보재산 으로써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 41.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 상호간의 우선관계는 압류에 관한 국세, 교부청구한 국세, 납세 담보 있는 국세 순이다.
- ② 세무서장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여 납부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다.
- ④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의 법정기일은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
- ⑤ 공과금의 강제징수를 할 때 그 강제징수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공과금의 강제징수비는 국세에 우선한다.

세법개론

제2교시

42.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과 관련한 법정기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사 19

- ①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과 세표준을 예정신고하는 소득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 ②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납부고지 서의 발송일
- ③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 어촌특별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④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전 징수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납부 고지서의 발송일
- 43. 증여세 관할 세무서장이 갑의 토지(A)를 압류하여 2023년 12월 10일 180,000,000원에 매각하고 강제징수비 10,000,000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회계사 18

- (1) 증여세: 50,000,000원[갑은 토지(A)를 2022년 6월 1일에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관할 세무서장은 갑에게 2023년 6월 5일에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갑은 이를 체납함]
- (2) 대한은행 대출금: 60,000,000원[2022년 7월 5일 토지(A)에 저당권 이 설정됨]
- (3) 갑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 · 최종 3월분 임금채권: 10,000,000원
 - · 기타 임금채권: 20,000,000원
- (4) 부가가치세: 100,000,000원(2023년 7월 15일에 신고하였으나 납부 하지 못함)
- (5) 부가가치세 관할 세무서장은 토지(A) 매각대금에 대해 증여세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의 교부를 청구함
- ① 0원
- ② 30,000,000원
- ③ 50,000,000원

- ④ 90,000,000원
- ⑤ 100,000,000원

44. 국세기본법상 과세 관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회계사 12

- ①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이 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처분은 항상 적법하며 납세자는 소관 관할 세무서를 밝혀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 장이나 국세청장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 ④ 과세표준신고서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⑤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5.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무사 16

-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기한 후 과세표준신 고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경과 하였더라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라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하여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그에 관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원천징수의 무자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5)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경우라도 최초의 결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것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46.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의무자 갑이 100만 원의 소득세를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고하였는데, 그 후 300만 원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세액이 300만 원으로 확정된다.
- ② 납세의무자 을이 300만 원의 소득세를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내에 신고한 경우 세액이 300만 원으로 확정된다.
- ③ 납세의무자 병이 200만 원의 소득세를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고하였는데, 그 후 100만 원으로 감액경정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만으로 는 세액이 100만 원으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 ④ 원래 신고하였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신고하여 감액경정을 청구하려면 법에서 정한 과세표준신고서(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 포함)를 제출한 자이어야 한다.
- ⑤ 납세의무자 정이 2022년 한 해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2023년 5월 20일에 500만 원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신고 내용에 계산 오류가 있어 감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 경정청구는 2028년 5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제2교시

①형

15/16

- 47. 「국세기본법」상 신고와 경정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정기간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8. 위법소득의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사 17

- ① 회사의 부사장이 회사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을 횡령한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 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소득에 해당한 다.
- ② 매매가 위법한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③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법인이 그 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소득처분에 의한 근로소득 으로 과세될 수 없다.
- ④ 법인과 이사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금전소비대차라 하더라도 그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 ⑤ 위법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는 형법에 따른 몰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9. 다음 상황에 따른 증액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사 13

- (1) ㈜A는 2021년 귀속분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미신고
- (2) 2023.2.15. 관할 과세관청은 2021년 귀속분 법인세로 2억원을 결정 및 고지하고 이후 이 세액은 ㈜A의 불복청구 없이 확정되었음
- (3) 2023.7.20. 관할 과세관청은 증액경정에 의해 2021년 귀속분 법인세로 5천만원을 추가 고지하고, 2023.7.22. ㈜A는 이를 수령함
- ① 당초처분에 따라 확정된 세액 2억원에 대한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절 차는 경정처분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② 당초처분을 근거로 하여 행한 징수 등 후속처분이나 가산금의 부과 는 경정처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③ 경정처분에 따라 증액된 5천만원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초처분과 별 개로 불복 청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④ 증액경정에 대한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경정으로 증가된 세액 5천만원에 대하여 2023년 11월 15일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 경정청구는 유효하다.
- **50.**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와 추가자진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사 13

-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 ③ 납세자가 적법하게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④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 5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 ②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 ③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 ④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⑤ 법령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법개론

제2교시

52.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회계사 22

- ①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②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 한다.
- ③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④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 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 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53.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사 17

- 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나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납세의무자가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할세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③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 서 착오에 의하여 과소신고를 한 때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④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법인세를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면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 ⑤ 정부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4.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사 18

- 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④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액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⑤ 세법에 따른 제출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55.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회계사 19

- ①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 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② 국세환급금 중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 원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 ③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 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 ④ 국세환급금 중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 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⑤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 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 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56.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회계사 21

- 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환급 청구의 안내·통지를 하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중 단된다.
- ②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 ③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인 때에는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 ④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 양도 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⑤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나,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한 때에는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한다.
- 57.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 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 (ㄴ)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국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로 한다.
- (C)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 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로 인하여 중단되 지 아니한다.
- (ㄹ)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할 수 없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ᄀ, ㄴ, ⊏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17/16

58.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사 23

- ①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하므로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 는 것을 신청한 경우에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 야 한다.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 ③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 되지 아니한다.
- ④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⑤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 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59. 국세기본법상 조세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회계사 20

-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심사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심사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심사청구인이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60. 「국세기본법」상 국세심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회계사 21

-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심사청구인이 법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재결청에 신청하면 재결청은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심사청구인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같은 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61.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사 15

①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1) 형

-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불복신청 또는 청구금액이 5천만 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③ 불복청구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당초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 ④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 ⑤ 종합부동산세의 결정 고지세액 1천만 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가 재결청에 변호사 등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재결청은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판청구인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통지하여야 한다.
- 62.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사 1

- ①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 ②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의 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조세심판관이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 하였던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 ⑤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의 요청이 있고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63. 국세기본법상 국세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구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 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나,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 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③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 ④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 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 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을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세법개론

제2교시

64.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사 18

- ①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 ②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그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 ③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 ④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⑤ 국세의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것으로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 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 65.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사 23

- ①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심사청구는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되어 정한 기 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심사청구의 보정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 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 ④ 심사청구인은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정한 기한까지 해당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기각결정을 한다.

66. 「국세기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회계사 23

- ①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여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 해당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 심판청구인은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 ⑤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7. 국세기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사 22

- ①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③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 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 ④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와 상임 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조 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
- ⑤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 68.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사 17

- ①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남은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 ④ 세무공무원은 법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그 사유 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세무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69.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의 20×3년도분 소득세에 대한 임대료수입 금액 누락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마친 후 다시 20×3년년도분 소득세에 대한 음식점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 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④ 세무공무원은 국외자료의 수집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 요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이 중지기간은 세무조사기간에 산입된다.
- ⑤ 세무조사의 적법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그 자체로서는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이 없다.

제2교시

①형

19/16

70. 국세기본법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다 시 할 수 있는 사유가 <u>아닌</u> 것은?

회계사 21

- 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②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 ③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 ④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 ⑤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71.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 중 '장부 등의 보관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무사 19

- ① 세무공무원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을 납세자의 동 의 없이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 ③ 납세자 등은 조사 목적이나 조사 범위와 관련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장부 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 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 무공무원은 어떠한 사유로도 해당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 ④ 세무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세무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의 반환을 납세자가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 등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72.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회계사 20

-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 ②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무조사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

73.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사 22

- ①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④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⑤ 세무공무원은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74.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회계사 23

-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도 납세자에게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 ④ 세법 적용에 착오가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유사한 세법 적용의 착오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⑤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중지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75.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가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신청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2교시

76. 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세무사 22

- (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 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 (ㄴ)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 (C)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 간이 3개월이하인 경우
- (ㄹ)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하는 경우

① 7, L

② ㄷ, ㄹ

③ 7, ∟, ⊏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77. 다음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것이다. 틀린 것은?

-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금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 ③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 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 ④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예고통지를 행하는 경우
- ⑤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제2교시

①형

21/16

1.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회계사 24

- ①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 ② 납부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 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 ③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 ④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고, 2회 연속하여 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서류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 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⑤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 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 2. 「국세기본법」상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회계사 24
 - ①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 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②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보다 우선한다.
 - ③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와 같은 순위로 징수한다.
 - ④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 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 3.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회계사 24
 -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며 국세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는 것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③ 국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⑤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는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을 납부 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을 그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 4.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 및 소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회계사 24
 - 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 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심판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⑤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 5.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 ②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 (5)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세법개론

제2교시

- 41.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 이 끝나는 때이다.
-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하는 국세의 수정 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확 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 ③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④ 납세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 ⑤ 상속세 및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 42.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무사 24

- 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은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 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마지막 날을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 ③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공제세액등을 의무불이 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 ④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 시효는 해당 국외체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⑤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다는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 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 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43. 국세기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사 24

- ①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모두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 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44.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공무원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세무공무원은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 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 ③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 ⑤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